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16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6414	주철현의원	'24.12.12.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2209534	임미애의원	'25.04.01.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10조(사업)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u>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u>
<u><신 설></u>	13의3. <u>농어촌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u>
14. ~ 16.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14. ~ 1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u>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u>

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